

2025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현지 전문기관 자문 -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순위 지원)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 한 번(1개 신청서)에 1개 국가, 5개 품목까지 신청가능,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
- 신청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1월)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 * 전문기관 자문 뿐 아니라 라벨링 현지화, 수입등록·검사, 지적재산권 지원금액 합산
 -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일반 자문	○ 통관(제품 수출 가능여부, 통관·검역 사전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	80%						
	○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출)							
	○ 관세(일반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 위생·검역(식품위생 기준, 신선농산물 검역기준 등)							
	○ 할랄 관련 전반적인 자문(인니, 말린, 중동에 한함)							
	○ 기타(현지어 표기법,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중국 건강기능식품 상품화 자문, 말레이시아 NPRA 제품분류 자문 등)							
특수 자문	① 미국 수입경보(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td> </tr> <tr> <td>2단계</td> <td>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td> </tr> <tr> <td>3단계</td> <td>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제출</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완료 시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제출	80%
	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제출						
	②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교육 및 컨설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바이어) FSVP교육비 지원, 유제품 등 정밀분석을 요하는 품목 정밀분석, 수입업자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td> </tr> <tr> <td>(수출업체)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서류 준비 등</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준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바이어) FSVP교육비 지원, 유제품 등 정밀분석을 요하는 품목 정밀분석, 수입업자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수출업체)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서류 준비 등					
(바이어) FSVP교육비 지원, 유제품 등 정밀분석을 요하는 품목 정밀분석, 수입업자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수출업체)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서류 준비 등								
③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FDA 규정, 절차, 서류준비 등)								
④ 현지 무역분쟁 및 클레임 관련 자문 (대금, 물품, 하자 등 클레임, 상표권 분쟁 등 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자문 등)								

* 자부담(20%)은 사업 신청 및 견적서 수취 후, 현지(해외) 전문기관으로 직접 송금

○ 지원국가

아시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캄보디아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	EU, 영국, 스위스
중양아	몽골, 카자흐스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으며,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홍콩, 대만, 유럽의 경우, 자문결과가 기본 영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자문 문의내용] 칸에 “국문 제공 희망” 요청 시, 국문으로 자문 결과보고 제공 가능

< 유의사항 >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다년간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